용 역 시 방 서

【 용역명 : 2026년도 고리본부 기반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

2026. 10.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 시설부

용 역 계 획 서

용 역 명	2026년도 고리본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 역 비	₩ 102,350,000 (VAT 별도)	
내 용	사급분 : -	
	도급분 : ₩ 102,350,000 (VAT 별도)	
예 산 과 목	WBS 10Q0100117006 / 고리본부 옹벽, 사면 및 교량 정밀점검용역	
용 역 기 간	착공 2026 년 11월	착공 후 3개월
	준공 2027 년 1월	
용 역 방 법	도급제	
용역 책임자	고리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 시설부장	
용역 감독자	고리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 시설부장이 임명한 자	
준공 검사자	고리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 경영혁신실장이 임명한 자	
준공 인수자	고리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 경영혁신실장	
첨 부 서 류	Ⅰ. 용역계약특수조건 Ⅱ. 과 업 내 용 서 Ⅲ. 안전계약 특수조건 Ⅳ. 정보보안 계약특수조건 Ⅴ. 협력업체 근로자재해보장보험 가입계약특수조건	
비 고		

Ⅰ. 용역계약특수조건

1. 용역명 : 2026년도 고리본부 기반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2. 용역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역의 범위

과업내용서 참조

4. 적용기준 및 규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안전점검·진단 편)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 국토해양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및 해양수산부 발행 항만시설물 관련 기준 및 지침
-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요령
-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 옹벽 관련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 절토사면 관련 설계기준 및 유지관리지침, 표준시방서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그 밖에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관계 법령 및 기술기준

5. 계약문서의 구성 및 효력

가. 다음 문서는 계약일반조건 제4조의 계약문서에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용역비 산출내역서, 기타제안서 등

나. 본 계약서의 모든 구성부분은 당사자에게 동등한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계약조건과 부록간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계약조건이 우선하며, 계약조건 상호간이나 부록 상호간에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가장 관련이 깊고 상세하게 기술된 조문이 우선한다.

다. 본 계약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은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변경계약에 의하여만 유효하다.

6. 용역수행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 정보 및 지침 등을 근거로 용역을 수행한다. 단,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 정보 및 지침 등이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에 적합하지 않거나 활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 통보한 후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업추진 주요일정(Project Milestones) 및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공정계획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업무내역, 수행조직, 인력투입계획, 현장대리인계, 보안각서, 재해방지책임자, 업무절차, 세부수행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예정표는 단계별 수행을 기본으로 하여 임의단계 종료시 주요 현안문제, 향후 조사방향 등에 대한 협의 후 진행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별로 배정된 예정인력 및 업무별 인력투입률을 반영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상세한 조사내용과 공정진도 등 용역수행내용과 익월의 수행계획이 포함된 월간용역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업무일지를 작성 비치하고 발주자가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출장내역, 인력투입실적, 주요 작업내용, 조사계획 등)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정표 상의 일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를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즉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만회할 방법을 수립하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 일정을 협의 조정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각 조사 항목별로 세부절차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대민협의에 대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 지역주민 등의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의 공기는 총괄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우리회사의 사정(대관 인·허가 일정변경 등)에 따라 용역 공정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용역수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우리회사가 세운 계획에 따라 용역보고서의 제출기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아. 우리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공기의 변경이 필요할 시는 공기단축 또는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용역범위가 추가되거나 기타 감독원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서면요구로 공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자. 다음의 경우 본 용역은 용역 실시중이라도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중지하여야 하며, 그 사유 해제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개하여야 한다.

1) 우리회사의 계획변경으로 용역의 보류 또는 취소 통보시

2)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보류 또는 취소 통보시

3) 기타 불가피한 경우

차. 본 과업 수행상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범위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계약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카.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최신 자료와 기술을 이용토록하고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 수행과정 및 완료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본 계약당사자 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의 첨부자료로서 승인을 득한 경우에도 계약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파.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용역공정표

구 분	기 간(일)									비고
	10	20	30	40	50	60	70	80	90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및 시험		■	■	■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	■	■			
결과보고서 작성 및 FMS등록*					■	■				2종 시설물
최종보고서 작성 (종합결론 및 보수보강 포함)								■	■	2종 및 종외

*시설물안전법 2종시설물은 26년도까지 FMS e-보고서 제출 완료

8. 당사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

1)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 하수급자의 부작위 또는 작위행위로 인한 발주자의 모든 비용과 손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며 배상하여야 한다.

2) 사업책임기술자는 본 용역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감독원과 업무 협의 및 연락을 담당한다. 그리고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적 및 기술적인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를 대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및 그 하수급자의 직원, 대리인 등이 용역이 수행되는 지역에 적용되는 모든 법규와 작업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지역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그 지역의 모든 인가, 허가, 승인 및 승낙 등을 득하여야 한다. 본 항에 관련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본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제공하는 시설, 기자재, 가구 및 기기등의 사용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용이 끝난 후 내구재는 발주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연적인 마모 또는 노후화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및 그 하수급자에 적용되는 법적조치 및 규제 등에 따른 모든 수수료나 과태료 및 벌금의 지불과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취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자격, 우수인력 및 설비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설비, 인력확보 및 양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8) 현장 조사시 시험 데이터나 결과가 개연성이 결여되었거나 재현성이 없을 시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재조사 하여야 한다.
9) 소정의 조사기간내에 조사의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책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0) 대외기관의 인허가 관련 협의사항 발생시 관련 인허가 협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
1)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용역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정보, 설계기준, 외국 기기공급자가 제공하는 자료 등 구독 가능한 자료(Data)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9. 승인

가. 본 계약에 따라 작성 제출하는 지침서, 도면, 기술규격서, 공정표 등 사업수행 절차상 발주자의 승인을 요하는 제반 서류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업무에 적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서류 등을 사업수행 절차상 명시된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명시된 기일 내에 승인을 하도록 한다. 단, 발주자가 이 기일 내에 승인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발주자의 승인이 계약상대자의 부작위 혹은 기타 결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0. 거부

가. 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결함사항 또는 불일치 내용을 계약상대자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가항의 결함사항 또는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계약조건에 부합되진 않는 업무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11. 현장안전관리

가. 용역 수행자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 및 방사선 안전관리 절차 미준수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도난, 보안, 안전 및 화재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사고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여 인적, 물적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작업구역은 안전표지판, 작업구획로프, 용역개요 등 표지판을 설치하여 작업구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작업전 일일작업내용, 위험개소, 기계적 불안전상태 등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주위에 운전중인 기기가 있을 경우 운전중인 설비와 작업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바. 현장 대리인, 작업책임자, 작업과 관련된 모든 작업자는 작업내용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각종 절차서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사. 용역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하고 감독직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인화성 물질 취급 시에는 화재발생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자.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항상 정리정돈과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12. 용역대가 지급기준

가. 용역대가는 별첨 용역비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적용률 등(이하 **“계약단가”**라 함)에 의거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비목별 실 발생비용에 대해 증빙서류(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전산 회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지급 청구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위 지급청구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한수원의 환수조치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없는 한 용역은 각 비목별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완수되어야 한다.

1) 확정분

(가) 시설물별 과업 완료시 해당 시설물의 계약금액을 확정 지급한다.

(나) 적용비목 :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등

2) 실비정산분

(가) 실 발생 기준으로 지급한다.

(나) 적용비목 : 직접경비(여비교통비, 현장체재비, 차량운행비, 현지보조인부노임, 위험수당, 기계기구손료, 보고서 인쇄비), 수중조사 직접경비(고무보트 및 엔진, 잠수장비, 콤푸레샤, 후카콤프레샤, 비디오 촬영장비, 스틸카메라 장비, 유선 수중 라이트, 발전기, 유류대, 편집장비 사용료, 기타 액세서리 및 장비운반, 로프, 수중비디오 카메라, 수중스틸 카메라, 비디오테이프, 차량운행비).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료,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 용역대가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수한 후 인수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계약일반조건 제29조 및 제30조에 의거 대가를 지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각 비목에 대한 실 발생비용에 대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단, 증빙서류의 제출이 법률상, 사실상 곤란한 비목 또는 소액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지출 관련 서류 또는 합리적인 설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다. 발주자는 용역대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거나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일 또는 보완요청일로부터 재제출 또는 보완일까지의 기간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과오지급, 감사 등으로 인한 이의제기 또는 지급거부 항목에 대한 청구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가 다음번 대가지급 청구시 반영해야 한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제7조 사용기준에 따라 유의하여 사용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해야한다.

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한수원의 환수조치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사. 준공불 지불유보 : 계약상대자가 시행해야 될 대관 인허가(협의 포함)를 미필한 경우 등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준공불 일부(해당 가중치)를 유보할 수 있으며, 유보사유가 해제될 때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의거 유보금을 지불한다.

14.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관련 증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공제)의 가입기간은 관련 고시 및 규정에 따라 본 용역 착수일로부터 준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보증금액 및 적정요율을 산출하여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발주자는 가입실적에 따라 보험(공제)료를 실적정산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보험과 관련한 보상사유 발생 시 즉시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상비를 발주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증감된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해야한다. 다만,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인 경우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않는다.

15. 준공검사 요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준공일 전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준공검사를 통하여 준공조치를 취한 후라도 발주자 또는 관련기관의 조치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요구기한 내에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16. 지식재산권 침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공급한 용역 또는 용역결과물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로부터 일체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독점적 권리(이하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지식재산권 등의 침해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계약상대자는 자기부담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부과된 배상금·소송비용 등 그와 관련된 발주자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공급한 용역 또는 용역결과물을 발주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 또는 용역결과물의 계속적 사용권을 획득하여 발주자에게 제공 또는 문제된 용역 또는 용역결과물을 지식재산권 등의 침해가 없고 기능상 동일하거나 더 우수한 것으로 대체하거나 문제된 업무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지식재산권 등의 침해가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본 지식재산권 침해 보증은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침해와 관련하여도 위 조항에 의한 책임을 진다.

17. 인허가 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결과물이 관련 공업규격, 표준, 법규 및 규제지침에 일치하며 또한 인허가 요건을 충족함을 보증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의 각종 인·허가 및 승인에 필요한 자료의 공급업무에 대해 규제기관의 규제사항을 만족시킬 책임이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반 인허가 및 승인을 취득하기 위해 국내 규제기관 및 정부당국과의 교섭시 관련자료와 정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심사중에 발생되는 변경사항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준공된 후라도 대관협의(인·허가사항 포함)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서류를 즉시 작성 제출 또는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마. 각종 인허가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단, 협의 등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관계기관의 보완 요구에 따라 과업 수행기간 중 제반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과업 종료후에도 이행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에 필요한 보완서류 등을 도급자 부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8. 하자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결과물이 관련법규 및 규정에 부적합하거나 규제기관의 규제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12개월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자처리 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기간을 발주자의 승인하에 연장할 수 있다.

19. 품질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용역업무의 품질보증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본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나. 계약서에 명시된 적용기준 또는 관련 규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한다.

다.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 및 규제기관 대표자는 계약상대자와 그 하수급자에 대해 품질보증 감사 및 품질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시 용역결과물이나 수행업무가 해당 품질요건에 부합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중 중요한 품질문제점 발생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요청서 접수후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발주자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중지에 대한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중 인지한 중대결함 사항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사업품질보증 활동을 위해 사업품질보증 조직 및 책임자를 임명하고 사업책임자 중심의 사업품질보증체제를 확립, 운영한다.

아. 기타 세부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 내용에 따라 시행한다.

20. 하도급

1) 과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활용하거나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과 동시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승인 요청시 하도급 대상 업무 내역이 포함된 용역내역서와 하도급 대상업체의 해당 분야 수행 경험, 능력, 품질보증 및 기타 자격요건에 관한 자료를 첨부한 승인요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자 및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거나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발주자는 하도급 발주 승인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승인된 하도급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수급자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승인을 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7)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8) 하도급의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을 위하여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계약건명, 계약금액, 하도급 부분 및 내역, 하도급자, 계약 이행기간, 하도급 사유(하도급인 및 기타 하도급조건 변경 시에는 변경하는 사유), 계약서 사본(계약체결 후 제출), 기타 참고사항
9) 도급자는 하도급자로 당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풍부한 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만이 과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면허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기성 지출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Ⅱ. 과 업 내 용 서

1. 일반사항

1.1 과업명 : 2026년도 고리본부 기반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가. 용역대상 및 위치

1) 용역대상 : 고리원자력본부 기반시설물 3개소

2) 위　　치 : 부산 기장군 장안읍 일대

나. 용역 기간 : 착수 후 3개월

다. 시설물 제원

시설물명	규모				준공년도	점검 도래시기
	높이(m)	길이(m)	상면폭(m)	연장(m)		
2발 상부 주차장 주변사면	12.7	989			기타	-
신고리 1발전소 방파제			7	932	2종	27.4.30
임시폐기물저장고 옹벽	6	129.5			3종	26.12.17
계	**3개소**					

라. 과업범위

관리기관	시설물명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고리본부	2발 상부 주차장 주변사면	◎	
	신고리 1발전소 방파제	◎	
	임시폐기물저장고 옹벽		◎

마.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에 따름)

1) 항만외곽시설물

구 분		부 위	정밀안전점검 실시범위	비 고
사석식 경사제	기본 시설물	◦ 상부공	○	
		◦ 사석경사면, 소파공(수상부)	○	
		◦ 사석경사면, 소파공(수중부)	○	
	부대 시설물	◦ 등대, 계선주, 방충재, 차막이	○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 추락방지시설	○	
	◦ 도로포장	○	
	◦ 도로부 신축이음부	○	
	◦ 환기구 등의 덮개	○	

2) 절토사면

구 분	시설물명	정밀안전점검 실시범위	비 고
기본 시설물	◦ 상부자연사면	○	
	◦ 사면	○	
	◦ 사면하부	○	
부대 시설물	◦ 보호시설	○	
	◦ 보강시설	○	
	◦ 배수처리시설	○	
	◦ 이격거리내 시설	○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 추락방지시설	○	
	◦ 도로포장	○	
	◦ 도로부 신축이음부	○	
	◦ 환기구 등의 덮개	○	

바.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의 범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에 따름)

1) 옹벽

구 분	시설물명	정밀안전진단 실시범위	비 고
기본 시설물	◦옹벽(지반・기초부, 전면부, 기타)	○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추락방지시설	○	
	◦도로포장	○	
	◦도로부 신축이음부	○	
	◦환기구 등의 덮개	○	

1.4 과업 세부내용

가. 정밀안전점검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종합평가 및 보수·보강방법 제시
5) 보고서 작성

나. 정밀안전진단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 평가
4) 종합평가 및 보수·보강방법 제시
5) 보고서 작성

1.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6.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착수신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사업수행 조직표
 ⓖ 안전관리계획서
 ⓗ 사전검토 보고서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e-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상기 1.6.1항의 착수신고 서류 3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6.2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점검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4)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1.7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8 안전관리

1.8.1 일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점검 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시설물별 안전점검 절차서 및 현장작업별 위험성평가표를 작성하여 현장 점검 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2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종사자의 안전

1)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발주처 안전작업규칙 및 기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용역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4)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충분히 한 후 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5) 호우, 태풍, 홍수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 피해를 최소로 하기위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용역장소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7) 현장 점검작업 중 필요시 작업공간을 보호하는 시설과 표시부표(Marking Buoy) 등 선박 통행제한 해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8.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실시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8.4 기타

상기 안전관리 사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에 따른다.

1.9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용역계획 및 세부사항

2.1 용역계획

2.1.1 일 반

용역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2.1.2 용역계획 수립

사전조사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용역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수립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5)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7) 점검장비 선정

구조물의 점검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점검보트, 예인선 및 부선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8) 용역종사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9)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1.3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안전점검・진단 편)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 국토해양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및 해양수산부 발행 항만시설물 관련 기준 및 지침
-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요령
-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 옹벽 관련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 절토사면 관련 설계기준 및 유지관리지침, 표준시방서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그 밖에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관계 법령 및 기술기준

2.2 세부시행지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에 의거 시행】

2.2.1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2.2.2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 · 진단편)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조사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 실시한다.

2.2.3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 · 진단편)에 따른다.

2.2.4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2.2.5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 (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2.6 안전성평가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2.2.7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2.2.8 보수·보강방법

1)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 · 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3)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 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 방법

3.1 일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을 참조한다.

3.2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 점검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결과를 작성한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사.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결과의 결정

○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아. 보수·보강 방법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성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 보수 · 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자.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안전등급 지정

○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차.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3.3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안전등급)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진단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진단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결과를 작성한다.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내진성능평가의 경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포함

○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사.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결과의 결정

○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아. 보수·보강 방법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

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성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 보수 · 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자.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차.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등의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4. 성과품 납품목록

4.1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1)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각 2부

2)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전체요약보고서 : 2부

3) 구조도면(복원도면) : 해당 시설물별 각 2부

4) 보수·보강 시공도면 및 시방서 : 해당 시설물별 각 2부

5) 보수·보강 공사비산출내역서 : 해당 시설물별 각 2부

6)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부록 : 해당 시설물별 각 2부

7) 전산자료 : 해석프로그램 실행파일, 보고서(부록포함) 및 설계도서 USB 각 5부

※ 상기 결과물은 감독원과 협의후 변경될 수 있음

4.2 용역수행 보고자료

제출자료	제출부수	제출시기
○현장조사 일일업무보고 (안전교육일지 포함)	1부	현장조사시 매일
○월간용역진행보고서	3부	익월 5일까지
○기타 용역진행 관련서류	필요량	요청시

※ 상기 결과물은 감독원과 협의후 변경될 수 있음

5. e-보고서 작성 방법

5.1 일반

e-보고서는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3종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부위를 외관조사망도에 표기하고, 사진 및 동영상 파일명에는 외관조사망도의 도면번호를 기입한다.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 · 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5.2 e-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e-보고서 구성은 다음의 내용에 맞게 구성되어야 하며, 폴더명 및 파일명은 식별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 작성해야 한다.

e-보고서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폴더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①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폴더, ② 과업지시서 폴더, ③ 보고서 폴더, ④ 보고서 부록 폴더로 구성되며, 각각의 폴더에 관련 파일을 수록하여야 한다. 각 폴더에 저장하는 파일의 형식은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과업지시서, 보고서 폴더에는 pdf 형식의 파일만을 저장하여야 하고, 보고서 부록 폴더의 파일 형식은 pdf 파일 형식을 원칙으로 하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아래 표에 기재된 파일 형식은 수록 가능하다.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폴더에는 계약서, 대가 산출 내역서 등 pdf 형식의 파일을 수록한다. 특히 다수의 시설물을 1건으로 계약한 경우 각 시설물 별로 계약금액을 알 수 있는 산출내역서,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수행한 경우 각 업체의 계약금액을 알 수 있는 산출 내역서 등 pdf 형식의 파일을 반드시 수록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 폴더에는 과업지시서,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지시서나 용역설계서 내용이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사전검토 보고서 등 pdf 형식의 파일을 수록한다.

「보고서」 폴더에는 안전점검등의 보고서의 내용을 pdf 형식의 파일로 수록한다.

「보고서 부록」 폴더에는 시설물관리대장, 사전조사 자료, 외관조사망도에 의한 손상평가도, 시험 및 계측성과 자료, 사진첩, 시설물 평가(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평가)자료, 수치해석 입출력 자료, 전문가 자문내용, 관리주체 심의결과, 기타 참고자료 등 관련 파일을 수록한다.

6.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서에서 제시한 조사방법, 수량, 범위 등을 변경하여서라도 조사성과를 개선 또는 향상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과업(課業)에 임하여야 하며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리회사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수행할 수 있다.

2) 이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모든 제출서류는 우리회사 기준에 따라야 하며 보고서는 공판 인쇄한다.

4) 모든 조사수량은 실수량에 의거 준공정산 변경하며 우리회사 사정이나 현장상황에 따라 감독원이 조사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5) 설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조사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6) 본 조사 수행중에 필요한 제반수속은 우리회사 협조하에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7) 본 조사 수행중 당사 발행의 제반자료를 필요시는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의하여 우리회사가 제공한다.

8) 용역중 또는 완료후에라도 감독원은 필요에 따라 본 과업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의를 가지고 협조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계약전에 과업지시서에 관한 의문점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하며, 계약 후에 의문점이 생겼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10)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사용할 모든 장비를 감독원이 승인한 공정표에 의거 작업량에 충분히 여유있게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용역용 장비는 현장 반출입시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용역 계획에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할 때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용역시행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제반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항상 용역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계획 대비 10% 이상 지연 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Ⅲ.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안전계약특수조건

전부개정 2026.03.30.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특수조건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당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건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에 있어 당사의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의 계약상대자와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에게 적용한다. 다만, 업무를 당사 사업장 외부에서 수행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①항 단서에 따라 이 조건을 일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사·용역은 기획, 경영, 교육, 출판(사서편찬, 교재 개발), 홍보, 번역 등이 해당된다.

③ 당사의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 체결 시 당해 계약서에 반드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① '산업안전사고'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에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③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이하 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④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⑥ '안전지적서'란 당사의 직원이 계약상대자와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가 수행하는 업

무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당사의 안전관리규정 및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에 위배되는 행위,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을 지적하는 서류[서식 1]를 말한다.

⑦ '감독부서'란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역무가 수행되는 현장에서의 작업을 직접 감독하는 담당자가 속한 부서를 말한다.

⑧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 및 당사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 및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대상 계약 또는 제8조 1항에서 규정한 안전허가 대상 작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역무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전담조직 체계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서식7]를 작성하여 착공 전 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2항에 의거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은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 제22조에 의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중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선임신고서 또는 안전관리 위탁계약서 등을 추가로 첨부하여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는 당사의 안전보건경영매뉴얼>안전보건경영방침을 감독부서로부터 인지 후, 자율안전서약서[서식 2]에 서명, 원본은 계약상대자가 보관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의 작업을 거부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을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에게 알려야 한다.

1. 적용 상황 : 안전시설물 미설치, 개인보호구 미지급, 상·하 동시작업,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수칙 미준수, 장비의 제원을 초과하는 작업요구, 신호수 또는 유도원 미배치 및 기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상황
2. 요청 방법 : 당사 출입통제어플>작업중지요청(Safety Call) 활용하여 유선통화를 하거나 당사 홈페이지 '참여마당>안전신고>작업중지요청'에 접속하여 신청
3. 조치 방법 :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기타 사항 :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은 소속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4조의2(공사 기간 및 공법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비용절감 등의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등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역무 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에 따라 설계변경을 공사 감독부서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 감독부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 협조한다.

⑤ 건설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9호에 의거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공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계약 시 예정공정(원전건설공사는 원전건설 표준사업관리절차서, 일반건설공사는 건축업무편람의 정해진 기간)보다 단축할 경우에는 안전보건 확보에 미흡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정보 제공 등) ① 계약상대자가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 및 기자재 등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당사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 질식과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요청하며, 당사는 필요한 정보를 문서(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기타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요청할 경우 당사는 지원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에게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사항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알리고, 관련 증빙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당사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 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행 후 그 결과를 감독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 전 산업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당사에 요청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작업중 사고발생, 작업방법 변경 등 위험성이 추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작업의 중지 및 안전조치를 취하고, 위험성평가를 개정하여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제7조(안전보건교육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고, 교육내용을 서류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법적인 교육 외에도 계약상대자는 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작업에서 작업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에도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작업중 안전보건 관련 개선요인 토의 등의 내용으로 안전교육(TBM 또는 PJB 등)을 시행하여 산업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유해·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고소 작업, 고온·고압 기기 및 증기근접 작업, 분진·비산 작업, 수상·잠수 작업,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 밀폐공간 및 기기내부 작업, 화재·폭발 위험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및 당사의 안전관리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작업 등 10가지 안전허가대상 작업을 수행할 경우, 당사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수료 서류와 해당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한 대상일 경우 신규채용자 건강진단을 포함한 서류를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최종 승인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단, 당사에서 지정한 감독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 혼재로 산업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작업시기 및 내용 조정이 가능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 사용전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관련 법령 및 당사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당사가 지정하는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2인 1조 근무 편성, 근속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의 단독작업 금지 등 계약으로 정한 안전 기준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제9조(작업환경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안전사고, 환경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당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당사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목욕시설
3. 탈의시설
4. 수면시설 등

④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작업환경 측정기관의 측정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개인시료채취 등의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당사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도급사업시 합동안전보건점검 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점검이 있는 경우 점검에 참여해야 하며,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된다. 점검결과에 따라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필수 안전수칙[서식 3]에 따라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 내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담당부서에서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련비용 처리실

적, 적정공사 기간 등의 서류를 요구 시 즉시 수집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점검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당사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은 1주일에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수준평가) ① 당사는「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9호에 근거하여 계약상대자 선정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단계에서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사·용역계약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공사계약 후 당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전안내 후 공사 수행 중 안전관리 계획등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실적을 연 2회이상 평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9항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을 평가받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따른다.

1. 최초평가

착공 후 30일 이내 [서식 6]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에 따른 증빙서류를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감독부서는 증빙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을 평가한다.

2. 재평가

감독부서는 아래 기준 중 한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즉시 [서식 6]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는 재평가를 위한 증빙서류를 감독부서에 제출한다.

가. 3개월 이내 휴업 3일 이상 산업안전사고 3건 이상 발생

나. 6개월 이내 휴업 3일을 포함한 요양일수 90일 이상 산업안전사고 발생 시

다. 최초 평가 및 재평가 후 6개월 초과 시

3. 환류

감독부서는 위 1호, 2호 평가 후 개선 필요사항 등 평가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선계획 및 이행결과를 평가결과 접수 후 30일 이내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감독부서는 개선 내용을 확인한다.

제12조(협의체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계약상대자의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원·하청 노사 관계자는 발주자에게 현장 산업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근로협의체는 매분기 개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을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사용한다.

구분	비목	사용 가능한 항목	기준근거
공사	경비>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 안전시설비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 본사 사용비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경비>안전관리비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 ○ 안전점검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 대책비 ○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 ○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비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기준
시설관리/ 청소용역	경비	○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 안전시설비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사규 청소 및 시설관리용역 운영지침
경비용역	경비	○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 안전시설비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사규 경비용역 운용지침
그 외의 용역	경비	○ 설계서에 반영된 안전관련비용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한 계약 설계서 (요율은 미적용, 실적급만 지급)

②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연평균 상주인원이 20인 이상인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또는 ISO 45001) 인증을 받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며, 인증 관련 비용은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다. 단, 일부 업종(조리, 청소, 시설영선, 조경, 경비)에 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산업안전사고대비 훈련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당사에서 시행하는 가상 시나리오 및 대응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산업안전사고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사고 인지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감독부서에 3시간(화학물질 관련 산업안전사고는 15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경미한 재해라도 당일 사고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 근로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자의 휴업일 수가 3일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당사 감독부서 및 안전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사고 발생을 미인지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 감독부서 및 산업안전담당부서에 3시간 이내 보고하고, 산업안전사고 발생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동료 근로자의 증언, 재해발생여부 확인 서류 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당사 감독부서 및 산업안전담당부서에 보고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사고 발생, 준공 또는 당사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당사에 매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산업안전사고 발생, 준공 또는 당사 필요시에도 동 문서를 당사에 제출한다.

※ 산업재해 처리실적 확인기간은 공사일(계약일)로부터 누적 적용

예시) 공사(계약) 기간이 '21.9.1. ~ '22.12.31. 일 경우, '22년 10월 말일 제출 시 산업재해 처리실적 확인기간을 '21.9.1. ~ '22.10.1.으로 적용

⑤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사 감독부서에 보고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정보망(www.csi.go.kr)에 사고관련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조사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작업중지)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산업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산업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산업안전담당부서가 인정할 때까지 감독부서는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서식 4]를 발행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항에 따라 당사의 요청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7조(안전수칙 위반 제재기준) ① 당사는 산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약기간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한다.

1. 대 상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 이행중인(작업중지 포함)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 관계수급인 또는 그 소속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

2. 항목별 제재기준

가. 벌점 부과기준

구 분	위반유형	벌점	비고
안전지적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안전관리수준 평가표 제외) ○ 한수원 안전관리규정 위반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4조~제15조 위반 (단, 제4조의 ③, 제10조의 ④ 제외)	5점/건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4조 ③ [서식 2] 자율안전서약서 미보관	1점/명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6조 ①.3.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미인증	10점/월	
안전보건 평가보고	○ [서식 6] 안전관리수준 평가표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거부	50점/건	* 관련근거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1조 ③
	○ [서식 6] 안전관리수준 평가표 점수가 50점 이하인 경우		

나. 제재기준

누계벌점	제재기준
30점	해당 사업소(또는 발전소) 정문에서 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자체 안전점검의 날 운영(1일)
50점부터 매 50점씩 증가시 (50점, 100점, 150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현장소장(안전관리책임자) 교체를 요청하거나, 또는 현장에 배치된 계약상대자의 모든 관리감독자가 외부기관의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이수 후 작업재개

3. 벌점 적용방법

가. 누계벌점은 최초 벌점부과일부터 1년 동안의 벌점을 합산하며, 1년 초과 시 전년도 누계벌점의 0. 3배를 적용하여 당해연도 벌점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나. 벌점은 발생후 2년의 기간이 경과되면 소멸 처리한다.

다. 벌점 부과 및 관리기간은 공사계약 단위가 아니고 공사업체별로 적용 및 관리한다.

라.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연평균 상주인원이 20인 이상인 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또는 ISO 45001)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인증을 받을 때까지 매월 1회 안전지적서를 발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안전지적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마. 안전담당부서는 누계벌점 30점 도달 시 1일 동안 안전캠페인, 자체 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하고, 누계벌점 50점 도달 및 도달 이후 매 50점 누계 시 작업중지 후 현장소장(안전관리책임자) 교체를 요구하거나 현장에 배치된 계약상대자의 모든 관리감독자가 외부기관의 관리감독자 집체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한다. 이때 캠페인, 안전점검, 교육 등의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4. 조치방법

'2'항 사항 발생 시 당사의 감독부서는 15일 이내에 [서식 4]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에 의거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담당부서는 관리대장[서식 5]에 기록·관리하고, 상보 제출시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를 본사 안전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② [서식 3]의 필수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소속된 계약상대자에게 [서식 1]의 안전지적서를 발행하고 제16조 제재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당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산업안전사고 발생 시 제재기준) ① 당사는 산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약기간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한다.

1. 대상

공사·용역 이행 중(작업중지 포함) 계약상대자측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산업안전사고를 유발한 계약상대자

2. 위약금 부과기준

구분	계약금액(VAT 불포함)	위약금(만원/명)	비고
사망	5억원 이하	1,000	
	5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2,000	
	500억원 초과 ~ 5,000억원 이하	4,000	
	5,000억원 초과	8,000	
부상	5억원 이하	250	
	5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500	
	500억원 초과 ~ 5,000억원 이하	1,000	
	5,000억원 초과	2,000	

※ 다만,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본 계약에 따른 안전준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다.

3. 위약금 적용방법

가. 위약금 부과 기준은 해당 공사·용역 계약금액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역무범위의 대상 사업소(또는 발전소)가 2개 이상이고, 사업소(또는 발전소) 계약금액 구분이 가능할 경우는 해당 사업소(또는 발전소) 계약금액을 적용한다.

나. 산업안전사고 1건에 재해자가 다수일 경우 위약금 산정기준은 재해정도가 가장 큰 재해자 1명의 위약금을 100% 적용, 나머지는 계약금액별 위약금 부과기준의 50% 적용 후 합산한다.

☞ 예시(5억원 이하) : 사망 2명, 부상(90일 이상) 1명 → 1,625만원 [1,000만원 + 500만원 + 125만원]

다. 부상은 초기 진단서 기준 휴업 3일을 포함한 요양일수 90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휴업 3일 이상이면서 요양 90일 미만 요양건은 위약금의 20%를 부과한다. 단, 보호구 미착용* 사고, 감전/아크화상 사고, 질식(밀폐공간, 잠수 등) 사고, 2m 이상 추락 사고, 끼임 사고의 경우 위약금의 100%를 부과한다.

*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연삭 및 절단작업, 용접작업, 화공약품 취급), 안전대(대상 : 고소작업, 고리 미체결도 미착용에 해당), 방염보호구 등

라. 산업안전사고 발생 시 제재기준은 산업안전담당부서의 사고조사 결과 계약상대자측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 적용하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특수계약(공정거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마. 가중적용: 은폐, 보고지연, 지시사항 미이행 관련 산업안전사고 발생 시 제3호 다목은 적용되지 않으며, 요양일수와 무관하게 제2호에 규정된 위약금 부과기준 전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내용에 따른 가중을 한다.

1) 은폐: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 초과하여 보고하였거나 허위보고 또는 미보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약금 부과기준의 2배액을 적용한다.

2) 보고지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제14조의 보고기한 경과 후 보고한 경우 위약금 부과기준의 1. 5배액을 적용한다.

3) 지시사항 미이행: 산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사의 지시사항을 미이행하여 산업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약금 부과기준의 2배액을 적용한다.

바. 설비피해, 발전정지·출력감발 및 공기연장 등에 대한 손해금액은 별도로 납부한다.

4. 조치 방법

위약금 부과사항 발생 시 업무주관부서장(시공 중 발생 사항은 시공부서장)은 발생 항목별 제재기준에 의거 해당 위약금을 당사에 별도 납부하도록 입금청구서 발행 및 공문을 통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단, 위약금 처리 후 가중적용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위약금을 당사에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소 산업안전관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소 산업안전관리담당부서는 [서식 5] 안전보건경영체계이행관리시스템(KOSMOS) 내 협력회사 벌점/위약금 관리 항목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19조(계약 해제·해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산업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사는 당해 공사·용역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근로자 건강 및 보건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한수원 사업장 등에서 역무를 수행하는 동안 건강상의 문제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역무를 수행하기 전, 소속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의 건강검진 결과 등 건강상태 확인자료*를 확보하고, 보건관리자 등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혈압측정 등)하여 건강상태가 양호한 근로자가 현장 출입 및 역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근로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진, 치료, 역무 조정, 대체 근로자 투입 등)

* 건강상태 확인자료 : 건강검진 결과(최근 1년 이내) 등 -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결과 [의사 소견 및 건강상태 판정결과(A,B,C,D) 포함]

2.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건강 위험군 분류기준'을 참조하여 소속 근로자(도급, 일용직 근로자 포함)에 대한 건강 위험군을 관리하고, '건강 고위험군 근로자 현황' 및 '건강 고위험군 관리 결과**'를 정기***적으로 당사의 감독자를 통해 사업장 보건관리자(또는 보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 보건관리 이행여부 확인감독 용도의 증빙자료

※ 근로자 검진결과 등의 민감정보·개인정보 등은 제외, 고위험군 근로자 인원수, 건강상담 등 보건관리 실적 포함

*** '최초 역무착수 전' 및 '분기 1회 이상'

부칙 <2026. 3.30.>

이 조건은 2026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안전지적서

안 전 지 적 서

No　　안전담당부서장　　㊞

귀하	안 전 지 적 서	통보 : 20 . . .	
		지적자 : ㊞	
지적일시 및 날씨 . . . 시경	장 소		
작업명 또는 내용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위반자			
한수원 감독부서 담당자			

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_____),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_____),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____),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_____),
☐ 중대재해처벌법(_____),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_____),
☐ 한수원 안전관리규정(_____), ☐ 안전계약특수조건 (_____)

지적 내용 :

지적사진		
처리	20 . . . 한수원 감독부서 담당자 : ㊞	결과 :
확인	통계기록자(안전담당자) ㊞	안전담당파트장 ㊞

[서식 2] 자율안전 서약서

자율안전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수령 및 착용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고온·고압기기 주변에 근접작업시 안전거리 확보와 방호시설(단열시트 등) 설치
4	잠수작업시 잠수사와 잠수보조원의 연락체계, 신호방법, 비상시 탈출방법 숙지
5	유해·위험물질 취급시 MSDS 게시 및 숙지
6	산소 및 가스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7	용접·용단작업시 불티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인 배치, 소화기 비치
8	중량물 작업/비계 설치·해체작업/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9	충전부 근접작업전 보호구 착용후 검전. 작업중 충전이 가능하므로 보호구 상시 착용
10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주취자 현장 출임금지)
11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 사다리 최대길이가 3.5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이동식 사다리 사용
12	그라인더, 둥근톱 등 회전기기 사용시 안전커버 등 안전장치 사용
13	작업 투입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 수료
14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15	6개월 미만 근로자 식별 조끼 착용. 2인 1조 작업수행
16	안전담당부서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수용

※ 필수 안전수칙 위반자 소속회사 벌칙

구 분	위반유형	벌점	위반자 소속회사 (계약상대자)
안전지적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안전관리수준 평가표 제외) ○ 한수원 안전관리규정 위반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4조~제15조 위반 (단, 제4조의 ③, 제10조의 ④ 제외)	5점/건	계약상대자 대상 안전지적서 발행 및 벌점부과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4조 ③ [서식 2] 자율안전서약서 미보관	1점/명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6조 ①.3.라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미인증	10점/월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귀중

[서식 3] 안전수칙 위반자 소속회사 벌칙사항

안전수칙 위반자 소속회사 벌칙사항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수령 및 착용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고온·고압기기 주변에 근접작업시 안전거리 확보와 방호시설(단열시트 등) 설치
4	잠수작업시 잠수사와 잠수보조원의 연락체계, 신호방법, 비상시 탈출방법 숙지
5	유해·위험물질 취급시 MSDS 게시 및 숙지
6	산소 및 가스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7	용접·용단작업시 불티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인 배치, 소화기 비치
8	중량물 작업/비계 설치·해체작업/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9	충전부 근접작업전 보호구 착용후 검전, 작업중 충전이 가능하므로 보호구 상시 착용
10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주취자 현장 출임금지)
11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 사다리 최대길이가 3.5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이동식 사다리 사용
12	그라인더, 둥근톱 등 회전기기 사용시 안전커버 등 안전장치 사용
13	작업 투입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 수료
14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15	6개월 미만 근로자 식별 조끼 착용. 2인 1조 작업수행
16	안전담당부서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수용

□ 필수 안전수칙 위반자 소속회사 벌칙

구 분	위반유형	벌점	위반자 소속회사 (계약상대자)
안전지적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안전관리수준 평가표 제외) ○ 한수원 안전관리규정 위반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4조~제15조 위반 (단, 제4조의 ③, 제10조의 ④ 제외)	5점/건	계약상대자 대상 안전지적서 발행 및 벌점부과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4조 ③ [서식 2] 자율안전서약서 미보관	1점/명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6조 ①.3.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미인증	10점/월	

□ 위반횟수 누적기간

○ 해당 공사·용역의 계약기간 중 해당 사업소에만 적용

[서식 4]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

결재	한수원 감독부서	
	차 장	부 장

○ 계약번호 :
○ 공사·용역명 :
○ 공사·용역기간 : 20 . . ~ 20 . . .
○ 시공회사명 :

(제재사실)

1. 발생일시 : 년 월 일 (시 분경)
2. 공사장소 :
3. 위반내용 :
 ○ 관련규정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_____조
4. 제재내용
 ○ 안 전 사 고 : 벌점 부과_____점
 ○ 산업재해 보고 : 벌점 부과_____점
 ○ 안 전 지 적 서 : 벌점 부과_____점
 ○ 벌 점 누 계 : _____점
 ○ 위약금 부과 : _____원
 ○ 작업중지(중지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상기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위와 같은 위반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년 월 일

시공회사 대표자 성 명 : (인)
시공회사 관리감독자 성 명 : (인)

※ 위반사실 적발경위 (간략히)

작 성 자(한수원 감독부서) : 소 속 성 명 (인)

※ 안전담당부서 담당자 : (인)

[서식 5] 수급인 벌점/위약금 부과 현황 관리대장

수급인 벌점/위약금 부과 현황 관리대장

① 업 체 명 (대표자 등)	② 계약번호	③ 공사/용역명	④ 총공사비 (백만원)	⑤ 공사/용역 기간	⑥ 벌점 또는 위약금/내용	⑦ 벌점 또는 위약금 누계	⑧ 부과일자	산업안전사고(또는 벌점부과) 관련					
								⑨ 발생일	⑩ 장소	⑪ 업체(구분)	⑫ 공사/용역(작업) 내용	⑬ 사망자	⑭ 부상자(입원일수)
										□ 수급인 □ 하수급인() □ 재하수급인()			

[작성요령]

① “업체명”은 계약상대자(수급인) 업체명과 대표자, 면허 또는 등록번호를 기재

② “계약번호”는 한수원 ERP에서 부여된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계약번호

③ “공사명”은 우리회사로부터 도급받은(수급인) 공사 또는 용역명 기재

④ “총공사비(백만원)” 는 우리회사로부터 도급받은(수급인) 총 공사/용역비 기재

⑤ “공사/용역기간”은 계약서상 공사/용역기간 기재

⑥ “벌점 또는 위약금/내용”은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7조(안전수칙 위반 제재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벌점 또는 위약금 및 내용 기재

⑦ “벌점 또는 위약금 누계”는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7조(안전수칙 위반 제재기준)에 따라 해당업체에 부여된 벌점 또는 위약금 누계 기재

⑧ “부과일자”는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6조(안전수칙 위반 제재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벌점 또는 위약금 부과일자 기재

⑨⑩⑪⑫⑬⑭ “산업안전사고, 벌점 또는 위약금 부과”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

⑪ “업체(구분)”은 산업안전사고 발생, 벌점 또는 위약금 부과 대상 업체 기재

⑭ “입원일수”는 최초 요양·보험급여결정 통지서상의 입원일수

[서식 6]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안전보건－1044 개정, 2025.2.6.)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일반협력회사 用)

평가일 : . .

협력회사명		상시 근로자수	
계약명		계약번호	
상주여부		점수	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비고
A. 안전보건관리 체계 수준 (20점)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 여부 및 이행상태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수준	5		
B. 실행수준 (40점)	4. 위험성평가 ・작업 전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기준 수립 및 준수(보호구 착용 등)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수준(지도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의 계획 및 실시, 기록관리(성과분석)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준수 수준	5		
	9. 안전보건 관리비용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준수 여부	5		
C. 운영관리 수준 (20점)	10. 신호 및 연락체계 ・신호 및 연락체계 관리 수준	5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취급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2. 비상계획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D. 재해발생 수준 (20점)	13. 산업재해 현황 ・재해율, 산업재해 실적	20		*산업재해발생에 따른 감점부여
	평가 점수(100점 만점) 계	100		

개선 필요사항

-

평가자	(서명 또는 인)	관리감독자	(서명 또는 인)

※ 평가자는 협력업체를 감독하는 한수원 감독자이며, 관리감독자는 한수원 해당 부서장임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일반협력회사 用)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 체계 수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1. 일반원칙	우수(5점)	- 협력회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있고,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의지를 포함하고 있음.
	보통(3점)	- 협력회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있으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의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미흡(0점)	- 협력회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음
2. 계획수립	우수(10점)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어 있음
	보통(5점)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형식적임.
	미흡(0점)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없음
3. 역할 및 책임	우수(5점)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회사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역할, 책임 및 권한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교육이력) 등**을 가지고 있음
	보통(3점)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회사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역할, 책임 및 권한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또는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교육이력)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구성원이 존재함.
	미흡(0점)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회사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음

B. 실행 수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4. 위험성평가	우수(5점)	-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전교육, 전파교육, 서류 서명 등**의 관리가 잘 이행되고 있음
	보통(3점)	-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전교육, 전파교육, 서류 서명 등의 관리가 일부 이행되지 않음
	미흡(1점)	-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전교육, 전파교육, 서류 서명 등의 관리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짐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5. 안전점검	우수(10점)	- 도급작업의 **작업관련 점검표를 절차대로 작성**하고 있으며,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하고 있으며, - 작업개시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보통(5점)	- 도급작업의 작업관련 점검표 작성이 미흡하거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상태가 미흡함 - 또는 작업개시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잘 운영되지 않고 누락되는 경우 발생
	미흡(0점)	- 도급작업의 작업관련 점검표를 작성하지 않음 - 또는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음
6. 이행확인	우수(10점)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한수원 지적사항 포함)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 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이행
	보통(5점)	- 안전조치 및 개선완료 확인 이행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됨
	미흡(0점)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할수 없음
7. 교육 및 기록	우수(5점)	- 법정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기록 관리상태 양호 - 사고사례, 아차사례 전파 교육 양호
	보통(3점)	- 법정 **안전보건교육**등에 관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기록 관리상태 일부 미흡함 - 또는 사고사례, 아차사례 전파 교육이 일부 미흡함
	미흡(0점)	- 법정 **안전보건교육**등에 관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기록 관리상태 확인이 불가함 - 또는 사고사례, 아차사례 전파 교육 실적이 없음
8. 안전작업허가	우수(5점)	- 한수원의 **안전작업허가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해** 관리감독자, 작업책임자 및 작업자가 자세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절차대로 시행하고 있음**
	보통(3점)	- 한수원의 안전작업허가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해 관리감독자, 작업책임자 및 작업자의 이해도가 낮고 허가외 작업 일부(1건이하) 발생
	미흡(0점)	- 한수원의 안전작업허가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해 관리감독자, 작업책임자 및 작업자가 알고 있지 않으며 허가외 작업 다수(2건이상) 발생
9. 안전보건 관리비용	우수(5점)	-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이 항목별로 마련되어 있으며 **적절하게 집행**중임 * 적절한 집행: 공정률 -30%이상 집행 (ex. 공정율 50%이상이면 집행율 20%이상)
	보통(3점)	-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이 형식적이거나 적절한 집행이 되지 않음
	미흡(0점)	-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이 없고 집행실적 확인 불가

C. 운영관리 수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10. 신호 및 연락체계	우수(5점)	- 크레인, 지게차 등 신호가 필요한 작업의 **신호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협력회사 내부 및 협력회사와 한수원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3점)	-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수립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임
	미흡(0점)	-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수립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이지 않고 작동하기 힘듦
11. 위험물질 및 설비	우수(10점)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목록**과 **점검, 정비 등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5점)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목록이 일부 누락되거나 점검,정비 등에 대한 업무절차가 형식적임
	미흡(0점)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목록이 없거나 점검,정비 등에 대한 업무절차가 없음
12. 비상대응훈련	우수(5점)	- 작업 관련 산업안전사고 **비상대응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시나리오,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보통(3점)	- 비상대응 훈련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형식적으로 실시함
	미흡(0점)	- 비상대응 훈련계획이 없고, 훈련도 실시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13. 산업재해 현황	우수 (20점-감점*)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 감소**함
	보통 (10점-감점*)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미흡(0점)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휴업을 제외한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감점: 최근 2년 동안 한수원 관련 작업으로 발생한 산업재해에 따른 벌점 기준
 - 6개월 이상 치료 부상: 평가기준에 따른 최초점수에서 -2점/건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인 이상 발생시 -4점으로 함)
 - 기타 산업재해 발생: 평가기준에 따른 최초점수에서 -0.5점/건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함)

□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일반협력회사 用)” 평가항목별 증빙서류(예시)

항목	증빙 서류
1. 일반원칙	- 안전보건경영방침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계획
3. 역할 및 책임	- 안전관리부서 등의 조직도, 업무분장표(역할,책임,권한 포함) - 자격이 필요 한 작업에 대한 자격증빙(교육이력 등)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결과 - 위험성평가 사전 교육, 전파 교육 결과(서명포함)
5. 안전점검	- 작업관련 점검표 작성 실적 -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 안전보호구 지급 및 관리 관련 절차
6. 이행확인	- 유해위험요인 안전조치 및 개선 계획 - 유해위험요인 안전조치 및 개선 실적(한수원 지적사항 포함) - 유해위험요인 안전조치 및 개선관련 절차
7. 교육 및 기록	-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및 실적 - 사고사례, 아차사례 전파교육 실적
8. 안전작업허가	- 작업허가서 등 작업시 필요서류
9. 안전보건관리비용	-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안전보건 관리비용 집행 실적
10. 신호 및 연락체계	- 크레인, 지게차 등 신호가 필요한 작업의 신호체계 - 협력회사 내부 및 협력회사와 한수원 간의 연락체계
11.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 목록 - 점검, 정비 등에 대한 업무절차
12. 비상대응훈련	- 비상대응훈련 계획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시나리오,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비상대응훈련 실적
13. 산업재해현황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안전보건공단 발행) - 산업재해 보고서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소규모 협력회사 用)

평가일 : . .

협력회사명		상시 근로자수	
계약명		계약번호	
상주여부		점수	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비고
A. 안전보건관리 체계 수준 (20점)	1. 작업관리자 · 현장소장(작업책임자) 별도 지정 및 전담 업무 수행	10		
	2. 안전담당자 · 안전담당 별도 지정 및 전담 업무 수행	10		
B. 실행수준 (50점)	3. 위험성평가 · 작업 전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10		
	4.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수준(지도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10		
	5. 교육 및 훈련 · 교육 참여도 및 TBM 실시, 작업자 위험 숙지 수준	10		
	6. 보호구 지급상태 ·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 수준	10		
	7. 사업장 관리상태 ·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수준	10		
C. 운영관리 수준 (10점)	8. 신호 및 연락 체계 · 신호 및 연락 체계	5		
	9.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취급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D. 재해발생 수준 (20점)	10. 산업재해 현황 · 재해율, 산업재해 실적	20		*산업재해발생에 따른 감점부여
	평가 점수(100점 만점) 계			

개선 필요사항

-

평가자	(서명 또는 인)	관리감독자	(서명 또는 인)

※ 평가자는 협력업체를 감독하는 한수원 감독자이며, 관리감독자는 한수원 해당 부서장임

※ 소규모 협력회사 : 공사 기간 3개월 미만 공사 중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로 한정함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소규모 협력회사 用)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 체계 수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1. 작업관리자	우수(10점)	- **현장소장(작업책임자) 지정 및 업무가 명문화**되었으며, 업무수행 실적이 존재함
	보통(5점)	- 현장소장(작업책임자) 지정 되었으나 업무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업무수행 실적 등 미흡
	미흡(0점)	- 현장소장(작업책임자) 지정 사실이 없거나 및 업무R&R 규정이 없음
2. 안전담당자	우수(10점)	- **안전보건관련조직이 구성**되고, **안전담당자 지정 및 업무가 명문화**되었으며, 업무수행 실적이 존재함
	보통(5점)	- 안전보건관련조직이 구성되고, 안전담당자 지정 되었으나 업무 R&R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업무수행 실적 등 미흡
	미흡(0점)	- 안전보건관련 조직구성이 없고 안전담당자 지정 사실이 없거나 및 안전보건 R&R이 없음

B. 실행 수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3. 위험성평가	우수(10점)	-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였고,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을 실시(서명포함)하였음
	보통(5점)	-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였으나,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실적이 없음(서명누락포함)
	미흡(0점)	- 위험성평가 수행실적 및 교육실적이 없음
4. 이행확인	우수(10점)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한수원 지적사항 포함)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 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이행
	보통(5점)	- 안전조치 및 개선완료 확인 이행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됨
	미흡(0점)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가함
5. 교육 및 훈련	우수(10점)	- **법정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고 있음 - **사고사례/아차사례 등의 전파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작업전 TBM**을 잘 이행하고 있음
	보통(5점)	- 법정안전보건 교육은 이수하고 있으나 사고사례/아차사례 전파, TBM 활동이 잘 이행되지 않음
	미흡(0점)	- 법정안전보건 교육, 사고사례/아차사례전파, TBM 활동 실적이 없음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6. 보호구 지급상태	우수(10점)	-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을 구입**하고 소속근로자에게 **배부**하였으며, **착용교육내역 및 지적사항 등 관리대장**이 존재함
	보통(5점)	-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을 구입하고 소속근로자에게 배부하였으나, 착용교육내역 및 지적사항 등의 실적 및 관리대장이 없음
	미흡(0점)	-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을 구입하지 않음
7. 사업장 관리상태	우수(10점)	-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위험요소 개선 등** 사업장 시설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활동 자료**가 구비되어 있음
	보통(5점)	-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위험요소 개선 등 사업장 시설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거나, 관련 활동 자료가 미흡함
	미흡(0점)	-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위험요소 개선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C. 운영관리 수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8. 신호 및 연락 체계	우수(5점)	- 신호가 필요한 작업의 **신호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협력회사 내부 및 협력회사와 한수원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3점)	-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수립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임
	미흡(0점)	-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수립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이지 않고 작동하기 힘듦
9. 위험물질 및 설비	우수(5점)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목록**과 **점검, 정비 등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3점)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목록이 일부 누락되거나 점검,정비 등에 대한 업무절차가 형식적임
	미흡(0점)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목록이 없거나 점검, 정비 등에 대한 업무절차가 없음

D. 재해발생 수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10. 산업재해 현황	우수 (20점-감점*)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 감소**함
	보통 (10점-감점*)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미흡(0점)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휴업을 제외한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감점: 최근 2년 동안 한수원 관련 작업으로 발생한 산업재해에 따른 벌점 기준
- 6개월 이상 치료 부상: 평가기준에 따른 최초점수에서 -2점/건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인 이상 발생시 -4점으로 함)
- 기타 산업재해 발생: 평가기준에 따른 최초점수에서 -0.5점/건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함)

□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소규모 협력회사 用)” 평가항목별 증빙서류(예시)

항목	증빙 서류
1. 작업관리자	- 현장소장(작업책임자) 선임 내역 - 안전관리 관련 조직도, 업무분장 내역
2. 안전담당자	- 안전담당자 선임 내역 - 안전보건관련 구성원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내역 - 안전담당자 등의 업무수행 실적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내역 - 위험성평가 교육내역(서명포함)
4. 이행확인	- 유해위험요인 안전조치 및 개선 계획 - 유해위험요인 안전조치 및 개선 실적(한수원 지적사항 포함) - 유해위험요인 안전조치 및 개선관련 절차
5. 교육 및 훈련	- 법정안전보건교육 이수내역 - 사고사례/아차사례 등 전파교육 실적 - 작업전 TBM 실적
6. 보호구 지급상태	- 안전관련물품 및 보호구 지급대장 - 보호구 착용, 지적 등 내역
7. 사업장 관리상태	- 설비 및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 설비 및 시설물 위험요소 개선 실적
8. 신호 및 연락체계	- 신호가 필요한 작업의 신호체계 - 협력회사 내부 및 협력회사와 한수원 간의 연락체계
9.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 목록 - 점검, 정비 등에 대한 업무절차
10. 산업재해 현황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안전보건공단 발행) - 산업재해 보고서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시설물 운영·관리 협력회사 用)

평가일 : . .

협력회사명		상시 근로자수	
계약명		계약번호	
상주여부		점수	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비고
A. 안전보건관리 체계 수준 (30점)	1. 인력확보 · 안전전문인력 보유(자격보유자 등) 및 안전업무 전담 수행	10		
	2.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 예산 편성 및 집행 수준	10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등 체계 구축 및 이행	10		
B. 실행 수준 (30점)	4. 위험성평가 · 작업 전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10		
	5. 재해대응체계 · 재해 신고·보고 절차, 유관기관 및 비상연락망 구축	10		
	6. 재해 대응 조직 및 업무 분장 · 재해 대응 조직 구축 및 업무 분장	10		
C. 운영관리 수준 (10점)	7. 교육 훈련 · 교육 훈련 계획 수립 및 이행	10		
D. 재해발생 수준 (30점)	8. 산업재해 현황 · 재해율, 산업재해 실적	20		*산업재해발생에 따른 감점부여
	9. 중대재해 후속 조치 · 중대재해로 인한 대책수립 및 이행	10		
	평가 점수(100점 만점) 계			

개선 필요사항
-

평가자	(서명 또는 인)	관리감독자	(서명 또는 인)

※ 평가자는 협력업체를 감독하는 한수원 감독자이며, 관리감독자는 한수원 해당 부서장임

※ 시설물 운영·관리 협력회사 :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 협력회사로 한정함(청소, 경비, 유지보수 등)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시설물 운영·관리 협력회사 用)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 체계 수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1. 인력확보	우수(10점)	- **안전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자격보유자 등) 관련 자격증이 구비되어 있으며, 안전보건 업무분장이 명확하며, 업무수행 실적이 존재함
	보통(5점)	- 안전전문인력(자격보유자 등)이 있으나 관련 자격증이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거나 업무분장, 업무수행 실적 등 미흡
	미흡(0점)	- 안전전문인력 미보유, 안전보건 업무분장, 실적 등이 없음
2. 예산편성 및 집행	우수(10점)	-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이 항목별로 마련되어 있으며 **적절하게 집행**중임 * 적절한 집행: 공정률 -30%이상 집행 (ex. 공정율 50%이상이면 집행율 20%이상)
	보통(5점)	-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이 형식적이거나 적절한 집행이 되지 않음
	미흡(0점)	-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이 없고 집행실적 확인불가
3.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우수(10점)	- **안전보건목표 및 실행계획**(예산편성 및 집행,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시설물점검 등)이 문서화 되어 있음
	보통(5점)	- 안전보건목표 및 실행계획(예산편성 및 집행,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시설물점검 등)이 형식적이거나 일부만 문서화 되어 있음
	미흡(0점)	- 안전보건목표 및 실행계획(예산편성 및 집행,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시설물점검 등)이 없음

B. 재해대응 체계 수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4. 위험성평가	우수(10점)	-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였고,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을 실시(서명포함)하였음
	보통(5점)	-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였으나,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실적이 없음(서명누락 포함)
	미흡(0점)	- 위험성평가 수행실적 및 교육실적이 없음
5. 재해대응 체계	우수(10점)	- 화재, 산업안전사고 등 사고별로 **비상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작성됨
	보통(5점)	- 비상시 연락체계가 작성되었으나 일부 누락됨
	미흡(0점)	- 비상시 연락체계가 없음
6.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우수(10점)	- **재해 대응 조직**이 구성되고, **업무분장**이 명문화되어 있음
	보통(5점)	- 재해 대응 조직이 구성되었으나 업무분장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0점)	- 재해 대응 조직 구성이 없고, 업무분장이 없음

C. 교육 훈련 수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7. 교육 훈련 수준	우수(10점)	-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법정 안전보건교육 사항을 준수함 -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구비되어있음
	보통(5점)	- 법정 안전보건교육 사항을 준수함
	미흡(0점)	- 법정 안전보건교육 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D. 재해발생 수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8. 산업재해 현황	우수 (20점-감점*)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 감소**함
	보통 (10점-감점*)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미흡(0점)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휴업을 제외한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감점: 최근 2년 동안 한수원 관련 작업으로 발생한 산업재해에 따른 벌점 기준
 - 6개월 이상 치료 부상: 평가기준에 따른 최초점수에서 -2점/건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인 이상 발생시 -4점으로 함)
 - 기타 산업재해 발생: 평가기준에 따른 최초점수에서 -0.5점/건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함)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9. 중대재해 후속조치	우수(20점)	-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등을 고려한 **재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상황보고·전파(내·외부), 작업중지·근로자대피·위험요인제거 조치, 피재자 구호조치 등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대책을 수립**하고 **비상대응 훈련**을 이행하였음
	보통(10점)	- 재해 시나리오 및 중대재해 발생시 대책을 작성하였으나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재해 시나리오를 작성하였거나, 중대재해 대책상 상황보고·전파(내·외부), 작업중지·근로자대피·위험요인제거 조치, 피재자 구호조치 등 내용이 미흡하거나, 대책 이행 실적이 부족함
	미흡(0점)	- 재해 시나리오 및 중대재해 발생시 대책을 작성하거나 이행하지 않음

□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시설물 운영·관리 협력회사 用)” 평가항목별 증빙서류(예시)

항목	증빙 서류
1. 인력확보	- 안전관리 관련 조직도 및 업무분장 내역 - 전문자격증 현황
2. 예산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안전보건 관리비용 집행 실적
3.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 안전보건 목표 및 실행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시설물점검 등 포함)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내역 - 위험성평가 교육내역(서명포함)
5. 재해대응체계	- 비상연락체계
6. 재해대응조직 및 업무분장	- 재해 대응 조직 - 업무분장 내역
7. 교육 훈련 수준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안전보건교육 실적
8. 산업재해현황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안전보건공단 발행) - 산업재해 보고서
9. 중대재해 후속조치	- 중대재해 대비 비상훈련 시나리오 등 비상훈련 계획 (상황보고·전파(내·외부), 작업중지·근로자대피·위험요인제거 조치, 피재자 구호조치 등 내용을 포함) - 비상대응 훈련 실적

[서식 7] 안전관리계획서 양식

안 전 관 리 계 획 서

공사/용역명		
공사/용역기간		
도급금액		
계 상 된 안전관리비		

20 . . .

한국수력원자력(주) ○ ○ 본부장 귀 하

결 재	공사/용역감독부서 검토			산업안전관리(담당)부서확인		
	담당	차장	부장	담당	차장	부장
	전자/수기결재 가능					

협 력 회 사 명

구 분	작 성 자	검 토 자	검 토 자	승 인 자
직 책				
성 명				
서 명				

1. 공사/용역개요
2. 안전관리 조직
3. 안전교육실시 계획

구 분	교육내용	주 관	대상자	실시주기	비고

4.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 결과 및 안전대책

번 호	작 업 공 정	예 상 위 험	주요안전대책

5. 안전순시 및 점검계획

번호	안전순시자	점검주기	순시 및 점검지역(장소)	비 고

6.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직 종	보 호 구 명	지급수량	지급시기

7. 작업인원 및 건설장비(용접기 등) 투입계획

직종 또는 중기명	투입일정	비 고

8.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계획

유해·위험기계기구명	주요 방호조치내용	관련법령

9. 비상시 인원동원체계 및 조치계획

위험발생개요 및 상황	동원인원(명)	조 치 내 용

10.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1. 일반사항(입찰 예정가 기준 작성)

발주자		공사금액	계	
공사/용역 종류 (해당란에 ○표)	1. 건축공사 2. 토목공사 3. 중건설공사 4. 특수건설공사		(1)재료비(관급 별도)	
			(2)재료비(관급)	
			(3)직접노무비	
			(4)기 타	
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대상금액 [공사/용역금액중(1)+(2)+(3)]		

2. 항목별 실행계획

항 목	금 액	비율(%)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
2. 안전시설비 등		%
3. 보호구 등		%
4. 안전보건진단비 등		%
5. 안전보건교육비 등		%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총 계		100%

3. 세부 사용계획

항 목	세부사항	단위	수량	단 가	산출금액	사용시기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11. 세부작업공정표

Ⅳ. 정 보 보 안 계 약 특 수 조 건

정보보안계약특수조건

일부개정 2026.03. 9.

제1조(목적) 이 정보보안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계약 체결 시 준수하여야 할 제반 보안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보안사고'란 계약상대자등이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 내·외부자에 의한 자료유출 및 외부 공격자의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침해사고 등으로 한수원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등'이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측 하수급인·재하수급인 및 각 작업자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24.7.17., 2026.3.9.>

③ '한수원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중 한수원의「문서관리지침」 및 「기술정보관리지침」에 의거 사외공개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4.7.17.>

1. 발주자가 계약상대자등에게 제공한 자료
2. 한수원에 제출한 계약 결과물에 포함된 자료

④ '자료유출'이란 '한수원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것을 말한다.

⑤ '정보시스템'이란 PC·서버·모바일기기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전산·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⑥ '정보자산'이란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전자정보, 문서 등을 말한다.

⑦ '휴대용저장매체'란 디스켓·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⑧ '업무전산망'(이하 '업무망'이라 한다)이란 한수원의 네트워크 중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영역으로,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전산망(이하 '내부망'이라 한다)을 말하고, 망 미분리 사업소는 인터넷서비스도 병행 제공되는 내부전산망을 포함한다.

⑨ '인터넷서비스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이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망을 말한다.<개정 2024.7.17.>

1. '한수원 협력사 인터넷서비스망'(이하 '협력사 인터넷망'이라 한다)
 한수원에서 계약상대자등에 제공하여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전용망
2. '외부 인터넷서비스망'(이하 '외부 인터넷망'이라 한다)
 한수원 외부에서 계약상대자등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연결한 망

⑩ '출입규정 위반'이란 한수원 시설에 출입할 때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 대책법 또는 한수원 출입관리지침에 의한 출입규정을 위반하여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12.30.>

제3조(보안준수 사항 등) ① 계약상대자등은 한수원 자료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수원의 정보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등이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침해사고, 자료유출과 같은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수원은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 파악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등은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4.7.17.>

③ 한수원은 필요 시 계약상대자등을 대상으로 보안점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를 시행하고, 관련 법령, 규정, 해당 계약조건 위반 시에는 개선조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등은 이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등은 한수원 협력사 인터넷망 및 사업자등의 인터넷망(이하 '외부 인터넷망' 이라 함)에 연결된 PC, 전자우편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에 한수원 자료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7.17., 2026.3.9.>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등이 한수원 사업관리 부서와 합의하여 한수원 외부에서 계약사업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된 PC, 전자우편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한수원 자료를 저장 및 송수신 하여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한수원 사업관리 부서의 승인 후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 포함) 동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7.17., 2026.3.9.>

1. 계약사업 착수 시 다음 각 목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이 포함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 후 한수원 사업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을 것
 가. '전산설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지정된 설비에서만 한수원 자료 저장 및 송수신
 나. '자료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여 한수원 자료의 저장 및 송수신 시 이력 관리
 다. 문서 암호화 또는 파일 암호설정, 다중인증 전자우편 사용, 공유폴더 사용 금지 등 자료 내용 유출 방지
 라. 계정 비밀번호 설정 및 주기적 변경, 운영체제·백신 업데이트, 악성코드 점검 등 PC 보안관리
 마. 자료 방치 및 휴대용저장매체 사용 통제, 사무실 출입문, 책상 서랍 및 캐비넷 시건 등 물리적 보안
 바. 계약사업 수행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운영 시 악성코드·취약점 점검 및 해킹 방지 등 보안관리
2. 계약사업 수행 시 보안관리계획에 따른 보안대책 이행 및 월별 자체 점검 수행
3. 계약사업 종료 시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된 정보시스템에서 한수원 자료 완전 삭제 및 증빙 제출. 단, 하자보증 등을 위해 완전삭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술정보관리지침」 제3조에 정의된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그 기술정보의 보관·반납·폐기 관련 사항은 「기술정보관리지침」 제22조를 따름

⑥ 계약상대자등은 한수원 시설을 출입할 때 한수원 「출입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0.12.30.>

제4조(계약상대자등의 행위제한 등) ① 계약상대자등은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 포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7.17.>

1. 한수원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2. 한수원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3. 한수원 정보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및 유포시도
4. 한수원 관련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및 유출시도
5. 원전 시설사진,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의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6. 원전 설계도면 등 주요 도면 유출 및 유출시도
7. 계약 결과물에 포함되거나 발주자가 제공한 한수원 자료에 대한 외부 유출 및 유출시도
8. 계약 수행 과정에서 생산한 자료에 대한 악의적 사용 및 개인목적 사용

9. 비인가 원격작업 등을 통한 해킹 및 해킹시도 또는 자료 유출 및 유출시도
10.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한수원 통제구역 무단 침입 및 내부 시스템 접근 및 접근 시도
11. 한수원 업무망 접속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으로 인한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
12.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웹하드·P2P 등)또는 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
13. 한수원 업무망과 계약상대자등의 인터넷망 혼용 사용으로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
14. 한수원에서 인가하지 않은 휴대용저장매체 무단 사용으로 자료 유출 및 유출시도
15. 한수원 업무망 및 인터넷 사용PC의 보안관련 프로그램을 삭제하여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
16. 계약상대자등의 단말기를 한수원 업무망에 무단 연결하여 해킹 및 해킹시도 또는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
17. 한수원 자료가 보관된 PC 보안관리 소홀(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비밀번호 노출, 문서 암호화 미처리, 시건장치 미장착 등)로 인한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
18. 한수원 자료 방치, 관리소홀(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등)로 인한 자료유출
19. 제3조 제5항에 따른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된 정보시스템 사용 시 보안관리계획 미수립 또는 미이행으로 인한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

② 계약상대자등은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 포함) 중 별표 1 "계약상대자등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사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7.17., 2026.3.9.>

③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 포함) 중 한수원 시설에 출입하는 계약상대자등은 별표 1 「계약상대자등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사항'에서 정한 출입규정 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12.30., 2026.3.9.>

제5조(부정당업자 지정 및 위약벌 부과 등) ① 계약상대자등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조의 보안준수사항 또는 제4조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계약상대자등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요구 및 별표 2 "보안 위약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의 부정당업자 지정 , 보안 위약벌 부과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7.17.>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등이 제3조의 보안준수 사항 또는 제4조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하여 한수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안 위약벌 납부와 별도로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신설 2024.7.17.>

[제목개정 2024.7.17.]

제6조(등록취소 및 입찰참가 제한 등) 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상 협력업체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가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보안위규 행위를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입찰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 측 작업자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7.17.>

② 계약상대자의 입찰제한 세부기준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별기준에 따른다.<개정 2020.12.30.>

제7조(계약 해제·해지 등) 계약상대자등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보안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또는 제4조 제1항의 각 호 해당행위를 한 경우, 한수원은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보안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보안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7.17., 2026.3.9.>

제8조(하도급 계약) ①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자도 한수원 자료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수원의 정보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7.>

1. 제3조의 보안준수 사항 및 제4조의 행위제한 사항
2. 하수급자가 보안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하도급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가능
3. 제3조 제2항에 따른 보안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 파악을 위한 조사 협조

② 한수원은 하수급자가 보안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 위 2항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하수급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않고, 제7조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부칙

이 계약조건(제1차 개정)은 2018년 4월 2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고시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한국수력원자력 「정보보안업무 세부운용지침」,「비밀세부분류지침」,「기술정보관리 지침」,「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조건(제2차 개정)은 2021년 2월 1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고시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한국수력원자력 「정보보안업무 세부운용지침」,「비밀세부분류지침」,「기술정보관리 지침」,「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 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조건(제3차 개정)은 2022년 11월 1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고시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한국수력원자력 「정보보안업무 세부운용지침」,「비밀세부분류지침」,「기술정보관리 지침」,「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4. 7.1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조건(제4차 개정)은 2024년 9월 1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

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과 동법 시행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한국수력원자력 「정보보안업무 세부운용지침」,「비밀세부분류지침」, 「문서관리지침」,「기술정보관리 지침」,「용역 등 외주 사업 보안관리 지침」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6. 3. 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조건(제5차 개정)은 2026년 3월 9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과 동법 시행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한국수력원자력 「정보보안업무 세부운용지침」,「비밀세부분류지침」, 「문서관리지침」,「기술정보관리 지침」,「용역 등 외주 사업 보안관리 지침」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계약상대자등 보안위규 처리기준

계약상대자등 보안위규 처리기준

□ 심각에 해당하는 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은 계약사업 수행 장소 및 한수원 정보시스템 사용 여부 등과 무관하게 적용한다.

□ 중대, 보통, 경미에 해당하는 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은 한수원 사내 상주하거나, 한수원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4항 및 제5항의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중대 위규사항으로 보아 해당 처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제4조(계약상대자등의 행위제한 등)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계약상대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 보안개선을 위한 계약상대자의 경위서 제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누출금지 대상정보)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한수원 정보시스템 접근 다. 통제·제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비인가 인터넷망 회선(무선공유기, ADSL 등) 무단 사용 4. 중요 출입규정 위반(한수원 원자력본부) 가. 타인의 출입증으로 출입 나. 출입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다. 경비인력 또는 보안관계자를 사기 또는 기망하여 출입 라. 유효기간 경과, 전출, 퇴직 등으로 효력이 다한 미반납 출입증으로 출입	○ 보안개선을 위한 계약상대자의 경위서 제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당사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5. 중요 출입규정 위반(한수원 원자력본부 외) 가. 타인의 출입증으로 출입 나. 출입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다. 경비인력 또는 보안관계자를 사기 또는 기망하여 출입 라. 유효기간 경과, 전출, 퇴직 등으로 효력이 다한 미반납 출입증으로 출입	상 동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4. 출입증 관리 소홀 및 절차 위반 가. 유효기간 경과, 전출, 퇴직 등으로 효력이 다한 출입증을 한수원 보안담당부서에 기한내 미반납 (미반납 출입증당 1건으로 적용) 나. 출입증 발급신청 및 승인기준 절차 위반	상 동

[별표 2] 보안 위약벌 부과 기준

보안 위약벌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 위약벌 세부 내용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벌 비 중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금의 5% 이하	계약금의 4% 이하	계약금의 2.5% 이하	계약금의 0.5% 이하
위약벌 상 한	10억원	8억원	5억원	1억원

1.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계약상대자가 한수원과 다수의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위규사항이 발생한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등이 제3조의 보안준수 사항 또는 제4조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하여 한수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안 위약벌 납부와 별도로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Ⅴ. 협력업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

협력업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

전부개정 2024.05. 8.

제1조(목적) 이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 계약에 있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이란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계약상대자의 하수급자가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한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계약상대자가 재해보상을 하게 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② '보험가입증명서'란 보험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① 다음 각호의 작업이 포함된 공사·용역(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주설비공사는 제외)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근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증명서를 착공계 제출 전까지 한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수원은 계약상대자가 착공계 제출 전까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당해 공사·용역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 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 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 용접작업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5. 액화석유가스(LPG)·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사일로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그 최대 연소 소비량이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정격 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 또는 운반 케이블(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일정 구간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해체·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 5킬로와트를 넘는 경우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경우

다. 최대 사용 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 목재 가공용 기계(둥근톱 기계·띠톱 기계·대패 기계·모떼기 기계 및 라우터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운반용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6. 주물 및 단조작업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작업(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 작업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 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 작업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이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0.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31. 게이지 압력이 98킬로파스칼(㎪)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2.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33. 맨홀작업

34.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5.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시험연구를 위하여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36. 법 제38조의4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작업

37. 로봇작업

38.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렬한 소음작업

39. 기타 잠수작업, 질소가스 누설 우려지역의 작업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근재보험 손해보상 범위와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단체상해보험(사망 포함)에 가입한 경우는 제1항에 따른 근재보험 가입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증명서 제출에 관해서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제4조(가입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근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1. 사용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할 것
2. 보상한도는 1인당 2억원 이상, 1사고당 2억원 이상일 것(보상한도 각 2억원까지의 보험가입비용은 한수원 부담, 각 2억원을 초과하는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가입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3.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자 또는 하수급자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손해도 보상할 것

제5조(보험료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한수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근재보험료(보험가입비용)를 정산 지급한다.

1. 보험료의 지급방식은 실비정산으로 한다.
 가. 공사·용역 설계 시 '적용요율(기본요율×조정계수×인상계수)'에 따른 보험료 산정 금액을 반영하되, 이윤, 일반관리비 등 타 비목에 연동되지 않도록 설계 반영
 나. 낙찰자가 근재보험료 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근재보험료 비목 금액은 준공 시 계약상대자의 응낙서로 감액
2. 보험료 정산지급 총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 실비(1인당 2억원/1사고당 2억원 보장 조건)를 기준으로 하되,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지급한도액 = 노무비(직접 및 간접) × 기본요율(기타건설업) × 조정계수 × 인상계수(1인당 2억원/1사고당 2억원)】
 ※ 지급한도액 '적용요율(기본요율×조정계수×인상계수)'은 별도 공지한다.
3. 계약상대자가 우리 회사가 발주한 특정 공사·용역에 대해 개별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계약상대자가 연간으로 타회사 역무를 포함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 총임금) × 해당 계약 노무비】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보험료 정산지급 요청 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와 보험 회사가 발급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한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24. 5. 8.>

①(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의 시행일은 별도로 정한다. (기존 계약특수조건에 따른 계약요청 행정처리 등 고려)